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6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임종국, 강동길, 김성준,
김인제, 김태수, 민병주,
박강산, 박 석,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송도호,
신동원, 아이수루, 왕정순,
, 우형찬,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봉준, 이소라,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북촌 서촌 등 한옥지역에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지원금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포함)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임차인 포함)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함(안 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생 략)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 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 에서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융자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u>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u> <u>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u> <u>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u> <u>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u> <u>이내에서 추가로 지원</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중 한옥체험업으로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 보조·융자금 한도액을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시 한옥체험업 등록업체는 2023. 7월 기준 약 228개로 이들 시설 중 한옥 수선으로 보조 및 융자지원 받을 경우,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지원신청 대상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계가 곤란함
- 이에 5년이상 운영한 한옥체험업에 대한 보조·융자금에 대한 10퍼센트 이내 추가 지원 대상은 현 시점에서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 서울시에 한옥체험업 지원현황(금액, 지원시기 등)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별도의 한옥체험업 지원 현황 통계가 없는 관계로 비용 추계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시행 시 보조 및 융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소요 비용은 관련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현황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 지원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고 역사도심으로서 서울의 고유한 경관 보전

□ 사업개요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1조
- 지원방법 :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비용지원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비용 지급
- 지원대상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소유자
- 사업예산 : 3,600백만원(보조금 3,050백만원, 융자금 550백만원)
- 지원금액 ※ 한옥 외관 공사비 : 보조금 + 융자금, 내부 공사비 : 융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 옥		한옥건축양식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신 축	계		150	100	75	50
	외부	보조	120	80	60	40
	내부	융자	30	20	15	10
전 면 수 선	계		180	120	90	60
	외관	보조	90	60	45	30
		융자	30	20	15	10
	내부	융자	60	40	30	20
부 분 수 선	보조		20		10	
	융자		10		5	
우수 건축 자산	보조		60			
	융자		40			

□ 추진실적

- 2001.~2024.1. 보조·융자 총 1,421동 약 502억원 지원

(2024. 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1~'11	'12~'18	'19	'20	'21	'22	'23	'24
합 계 (보조 + 융자)	1,421동	553동	429	127동	70동	82동	73동	85동	2동
	50,222	15,262	17,597	4,902	3,191	3,165	2,697	3,280	128
보조금 지 원	988동	345동	296	98동	59동	66동	51동	72동	1동
	37,950	10,723	13,149	3,900	2,757	2,580	2,100	2,721	20
융자금 지 원	433동	208동	133	29동	11동	16동	22동	13동	1동
	12,272	4,539	4,448	1,002	434	585	597	559	108

□ 2024년 서울시 한옥수선 등의 보조 및 용자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24년 예산액
제21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자지원)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	3,050,000
	- 한옥 신축 80,000,000원*10회	800,000
	- 한옥 전면수선 50,000,000원*24회	1,200,000
	- 한옥 부분수선 20,000,000원*20회	400,000
	- 한옥건축양식 신축 40,000,000원*10회	400,000
	- 한옥건축양식 전면수선 25,000,000원*10회	250,000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용자금 지원	550,000
	- 한옥신축 20,000,000원*5회	100,000
	- 한옥 전면수선 20,000,000원*13회	260,000
	- 한옥 부분수선 10,000,000원*5회	50,000
	- 한옥건축양식 신축 20,000,000원*5회	100,000
	- 한옥건축양식 전면수선 10,000,000원*4회	40,000

(참고자료)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참고) 서울시 한옥체험업 등록현황(2023.7월 기준)

연번	자치구			전수	한옥전수
계				228	8,586
1	종	로	구	185	3,371
2	중		구	1	433
3	용	산	구	0	261
4	성	북	구	8	1845
5	동	대	문	구	4
6	성	동	구	0	75
7	서	대	문	구	0
8	마	포	구	2	545
9	동	작	구	26	23
10	영	등	포	구	1
11	은	평	구	26	138
12	강	북	구	1	82
13	도	봉	구	0	27
14	노		원	0	25
15	중	랑	구	0	19
16	광	진	구	1	8
17	강	서	구	0	14
18	양	천	구	0	0
19	구	로	구	0	55
20	금	천	구	0	1
21	관	악	구	0	4
22	서	초	구	0	18
23	강	남	구	0	7
24	송	파	구	0	3
25	강	동	구	0	9

※ 서울시 한옥정책과 자료 제공